

제6절 위탁저작물 제작 계약²⁸

1. 위탁저작물 제작 계약 체크리스트

| 체크하는 내용 | | 예 | 아니오 |
|---------|--|---|-----|
| 01 |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특정하였나요? | | |
| 02 |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인지 확인하였나요? | | |
| 03 | 양도계약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전부 양도인지 일부 양도인지 확인하였나요? | | |
| 04 | 저작권 양도계약시 저작인격권의 귀속에 주의하였나요? | | |
| 05 | 저작권을 기관과 수탁자가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한 경우, 기관과 수탁자의 권리관계 및 지분을 확인하였나요? | | |
| 06 |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인지를 확인하였나요? | | |
| 07 |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이용의 방법과 조건을 확인하였나요? | | |
| 08 | 저작권 양도 또는 저작물 이용허락의 기간을 확인하였나요? | | |
| 09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하였나요? | | |
| 10 | 계약당사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였나요? | | |
| 11 | 위탁저작물 작성과정에서 권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였나요? | | |
| 12 | 계약내용의 변경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나요? | | |
| 13 |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였나요? | | |
| 14 | 계약 효력 발생일을 확인하였나요? | | |

28 위탁저작물 제작 계약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희석 교수님께서 집필하여 주셨습니다.

2. 위탁저작물 제작 계약 가이드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특정합니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특정하고,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할 때에는 저작물의 제호,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의 분량, 저작물의 공표일,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재산권의 종류 등을 기재합니다.

위탁저작물에 관한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인 현재의 권리자 이외에 저작자와 공표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수탁자가 창작자인 경우에는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일치할 것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법 제39조). 그러나,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법 제40조), 업무상저작물(법 제41조), 영상저작물(법 제42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구체적인 저작물의 종류로는 저작권법 제4조의 예시와 같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응용)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으며 이들이 계약의 대상이 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4조에 규정된 예시 이외의 저작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뮤지컬, 안무 등도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규정 중에는 제4조 각호의 분류를 전제로 하여,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칙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법 제99조 내지 제101조)나 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특례(법 제101조의2 내지 제101조의7)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특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상물이 해당 특정한 종류의 저작물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인지 확인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하는 저작물의 위탁계약에는 그 성질상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양도계약”)과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이용허락계약”)이 존재합니다.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양도받는 자(위탁자)에게로 이전됩니다. 만약 위탁자인 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기관이 단독으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저작물의 권리행사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용허락계약의 경우에는 권리는 여전히 창작자인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기관이 가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용의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과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 중에서 어느 것이 위탁의 목적과 해당 사업에 적합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양도계약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용이한 반면 이용허락계약에 비해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3) 양도계약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전부 양도인지 일부 양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수탁자는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양도계약에서 위탁자인 기관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을 것인지 일부만을 양도받을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별도의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는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동 제2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부 양도계약 시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가령 2차적저작

물작성권도 양도받을 것인지)을 둘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일부만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중 양도받을 권리의 종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대상이 되는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복제권(법 제16조), 공연권(법 제17조), 공중송신권(법 제18조), 전시권(법 제19조), 배포권(법 제20조), 대여권(법 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22조)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4) 저작권 양도계약 시에는 저작인격권의 귀속에 주의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저작권 양도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유형의 저작권계약에서도 저작인격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법 제13조)의 3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지만(법 제11조 제1항),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

나 이용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또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저작자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동 제2항)에는 (표시한 바에 따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지만(제13조 제1항),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는 이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는 이의할 수 있습니다(동 제2항).

저작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위탁자는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공표에 대해 다른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성명표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합의하여야 하며, 또한 저작물의 이용에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만료가 되지만,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법 제14조 제2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법 제15조 제1항).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권재산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5) 저작권을 기관과 수탁자가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한 경우 기관과 수탁자의 권리관계 및 지분을 확인합니다.

기관이 수탁자와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하기로 하였다면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어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공동저작물에서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지분의 '처분' 및 지분의 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사용·수익'이 자유로운 민법에서의 공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가령 질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제1문).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공동저작자가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저작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법 제48조 제1항 제2문).

공동저작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지분이 정해지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지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원칙적으로 그 지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됩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6)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그 이용허락의 성격이 독점적 이용허락인지 비독점적 이용허락인지를 확인합니다.

수탁자에게 권리를 유보하고 이용만을 허락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격이 위탁자인 기관만이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인지 기관이 아닌 자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 이외의 제3자와도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저작물의 이용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느 경우이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인 수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법 제46조 제3항).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7)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이용의 방법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의 방법과 조건을 가능한 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국내이용으로 한정하는지 해외이용도 포함하는지, 해외이용을 포함하는 경우 특정 국가를 지정하는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용할 매체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작물이 배급되는 매체가 오프라인 매체인지 온라인 매체인지, 온라인 매체인 경우 모바일 서비스도 포함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재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허락을 받은 자(양도계약의 경우 양수인도 마찬가지)가 제3자에게 저작물의 재이용 허락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이용조건을 합의합니다.

이들 이용의 방법과 조건은 금전적인 대가(이용료)와 결부되는 것이므로 사업목적에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판단합니다.

8) 저작권 양도 또는 저작물 이용허락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저작권의 양도기간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기간을 확인합니다. 저작권의 양도시점 또는 저작물의 이용 개시일은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저작물 완성시 등 당사자가 정하는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시점 또는 이용 개시일은 양도 또는 이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과 연동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양도기간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기간은 특정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9)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계약뿐만 아니라 저작권 양도계약에 있어서도 특별한 필요가 없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최대한 저작자 본인에게 유보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의 양수인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자가 저작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이용하거나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법 제45조 제2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의 목적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금전적인 대가나 이용료 산정시 이를 고려합니다.

10) 계약당사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며 필요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협상 과정을 통해 양도나 이용허락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추가하거나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양도 후 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재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거나, 재양도나 이용허락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위탁자인 기관은 저작권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인 저작자로 하여금 대상저작물의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과 전부 혹은 일부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의 창작을 금지하거나, 저작물의 독점적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에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서에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나 이용료를 명시하고 지급 방법과 지급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해외 기업과 계약할 경우 수령 화폐의 종류와 기준 환율 등에 대해 상호 합의 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11) 위탁저작물 작성과정에서 권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수탁자가 저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나 권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위탁자인 기관이 권리를 양도받거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작물을 기관이 이용할 시에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비하여 그 책임소재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2) 계약내용의 변경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해당 계약이 체결된 후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계약관계의 해소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변경사유를 구체적 또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되, 변경방법은 당사자의 서면방식에 의한 합의로써만 가능

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관계의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와 그 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해지는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계약관계를 장래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법정해제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하는 경우(약정해제사유)에 가능합니다. 가령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채무불이행)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 법정해제사유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연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작성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정해제사유와 함께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해 계약에 특유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약정해제사유)는 당사자가 합의한 후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하고 아울러 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명문으로 둘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도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시 위약금의 기준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13)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다 보면 계약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나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그 해결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해결은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만 재판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면 재판 외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판 외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에 대해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4조의2 제1항). 조정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며(법 제115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합니다(법 제116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117조 제5항). 따라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저작권 분쟁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에 의한 해결이 가능함은 물론입니다. 조정제도를 이용할지 말지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일 계약서가 약관의 형태라면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한 조항을 둘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상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14조) 주의하여야 합니다.

14) 계약 효력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본문에서 별도로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 체결일이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 됩니다. 계약기간과 저작권 양도기간 또는 저작물 이용허락기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발생일과 저작권의 양도기간 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기간의 개시일과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저작권의 양도기간이나 저작물의 이용허락기간도 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기간이 양도기간이나 이용허락기간보다 길다고 보아야 합니다.